

외화 펌뱅킹 서비스 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제 17 조 (면책) 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책임을 면한다.</p>	<p>제 17 조 (면책) <u>“갑”의 귀책 사유가 없는</u> 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업무처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그 책임을 면한다.</p>	<p>“귀책사유가 없는” 추가</p>
<p>제 23 조(관할법원)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<u>서울중앙지방법원</u>으로 한다.</p>	<p>제 23 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관할법원을 법이 정하는 법원으로 함</p>